

미술 서비스업 신고제 시행 안내

미술 서비스업을 운영하고 있다면, 지금 신고하세요!

「미술진흥법」에 따라 미술 서비스업 신고제가 2026년 7월 26일 시행되었습니다.
이에 따라 화랑업, 미술품 경매업 등 6개 업종이 신고 대상이 됩니다.

1 누가 신고 대상인가요?

화랑업



작가를 발굴 또는 양성하고
미술전시를 통하여 미술품을
중개, 대여하거나 판매하는 업

미술품 경매업



경매(「민사집행법」 제271조에
따른 경매는 제외)를 통하여
미술품을 중개하거나 판매하는 업

미술 전시업



미술품 등의 전시를 기획, 조직,
개최 또는 운영하는 업

미술품 대여·판매업



화랑업 및 미술품 경매업 이외의
방법으로 미술품(미술품에 대한
권리 포함)을 중개, 대여 또는
판매하는 업

미술품 감정업



미술품의 진위나 예술적, 문화적,
역사적 의미와 수준을 평가하여,
그 결과를 표시한 감정서를
발급하는 업

미술품 자문업



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
또는 반복적으로 미술품(미술품에
대한 권리를 포함)의 가치 평가
또는 취득과 처분에 관한 의견을
제공하는 업

2 어디에 신고 하나요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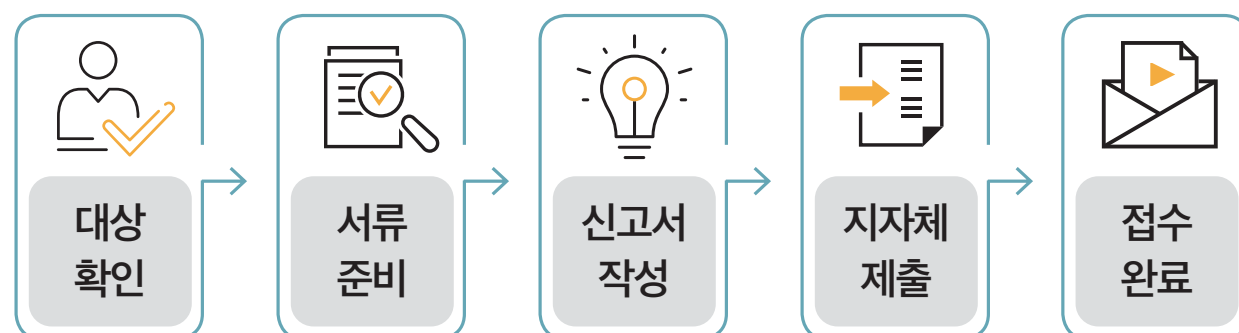
주된 영업장 소재지의 기초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합니다.



* 단 지자체 사무위임 규정에 따라 신고 관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미술진흥법 제18조 ① 미술 서비스업을 하려는 자는 신고서의 기재사항, 첨부
서류 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
도지사·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
3 어떻게 신고 하나요?



4 신고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?

- 신고 내용을 검토하여 적합한 경우 미술 서비스업 신고증이 발급됩니다.
- 발급된 신고증은 영업장 또는 영업장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합니다.

안내
사항

- 미신고 영업 및 의무 사항 위반 시 미술진흥법 제19조 및 제33조에 따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및
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- 단 2027년 7월 25일까지는 계도 기간으로 기간 내 신고 시 별도의 처분 등은 없습니다.



미술 서비스업 신고제 시행 안내

자주 묻는 질문

Q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미술 서비스업 신고를 해야하나요?

A 네,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미술 서비스업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.

Q 업종의 중복 신고가 가능한가요?

A 네, 가능합니다.

Q 작가가 본인의 작품을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도 신고 대상인가요?

A 아니요, 작가가 자기 작품을 판매하는 경우 또는 개인 소장자가 일회적으로 작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.

Q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신고를 하나요?

A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신고하는게 원칙이나, 비영리 단체 등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고유번호증을 제출하고 신고할 수 있습니다.

Q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문화재단 등도 신고 대상인가요?

A 미술진흥법에 따라 국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이 운영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.

Q 중개만 하는 플랫폼도 신고 대상인가요?

A 네, 단순히 판매자와 구매자를 중개해주는 경우에도 미술품 대여·판매업 신고 대상입니다.

Q 지점이 여러 개인 경우 어떻게 신고하나요?

A 영업장이 여러 곳인 경우 주된 영업장(본점)이 있는 경우 본점을 기준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.

Q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?

A ❶ 법인 등기사항증명서(법인인 경우) ❷ 사업자등록증명 ❸ 건물 등기사항증명서
❹ 영업장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(영업장이 타인 소유 부동산일 경우)

Q 영업 신고 외에 또 어떤 경우에 신고 의무가 있나요?

A ❶ 상호 또는 명칭, 주된 영업장의 소재지, 성명(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), 세부 신고업종을 변경할 시 변경신고 대상이 됩니다.
❷ 폐업 시 폐업 신고 대상이 됩니다.
❸ 영업의 양도, 상속, 법인 합병 등으로 미술 서비스업자의 지위를 승계 시 지위 승계 신고 대상이 됩니다.

상세 설명자료

